

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96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8월 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가.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시민체육 활동의 저변확대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 상위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『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』 운영의 전반적 필요사항을 체육전문 단체인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위탁하고자 “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 및 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”에 의거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운영 개요

-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
- 운영현황 : 20개종목 21개팀 168명(지도자 27, 선수141)

나. 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0.1.1.~2022.12.31.)
-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 -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출전
 -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한 급식개선 및 효율적인 합숙소 운영

- 우수선수 확보 및 성적에 따른 성과급 연봉제 운영
 - 운동경기부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·장비의 관리
 - 시정홍보 및 기타 운영경기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제반사항
- 소요예산(안) : 15,193,571천원(2020년 기준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및 제12조
-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관리위원회 심의('19.4.9)
-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을 위한 2020년 서울특별시 직장운동 경기부 사업계획('19.6.20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2002.01. ~ 2004.12. : 서울특별시체육회 운영위탁(1차, 3년)
- 2005.01. ~ 2007.12. : 서울특별시체육회 운영위탁(2차, 3년)
- 2008.01. ~ 2010.12. : 서울특별시체육회 운영위탁(3차, 3년)
- 2011.01. ~ 2013.12. : 서울특별시체육회 운영위탁(4차, 3년)
- 2014.01. ~ 2017.03. : 서울시특별체육회 운영위탁(5차, 3년 3개월)
- 2017.04. ~ 2019.12. : 서울시특별체육회 운영위탁(6차, 2년 9개월)

○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절차 이행여부

- 2019. 04. :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(76.24점)
- 2019. 07. :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(적정, 조직담당관)
- 2019. 08. :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국민체육진흥법

제10조(직장 체육의 진흥) ④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·운영하고 체육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

○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3조(경기부 설치 등) ① 시장은 시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·육성하기 위하여 시에 경기부와 서울특별시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둔다

제9조(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육진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12조(재계약)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,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

부칙<제6567호, 2017. 7. 13.> **제2조(의회동의 절차의 특례)**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0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체육정책과 전문체육팀 김동인 (☎2133-2687)